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3.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행복나눔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행복나눔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두류푸드마켓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 6. 30. 字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두류푸드마켓 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두류푸드마켓은 두류공원로50길 23,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242.63m²로 2017. 7. 20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은 기부식품의 모집 · 관리 · 배분 및 제공, 기탁자 발굴, 홍보 등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2년 4월중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5월중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6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운영주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 기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의 번	안 호
	00822030

제출일자: 2022. 3. 4.

제출자: 달서구청장
(행복나눔과장)

1. 제안이유

- 두류푸드마켓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 6. 30. 字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두류푸드마켓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 필요성

- 지역사회 특성 및 다양한 복지 욕구에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의 역량 필요

- 민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식품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 병행

다. 위탁사무 내용

- 푸드마켓 시설 관리
- 푸드마켓 사업 수행
 - 기부식품 등의 모집 · 관리 및 제공
 -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후원처(기부자) 발굴
- 기부식품 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 사업
- 그 밖에 달서구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개소일
두류푸드마켓	두류공원로50길 23(두류동)	242.63㎡ (지상1층)	2017. 8. 18.

마. 민간위탁기간: 2022. 7. 1. ~ 2027. 6. 30.(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정책자문위원회(복지 · 문화 · 보건 분야) 검토 결과

-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의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 운영이 적절
- 다양한 후원과 적극적인 공모 등을 통해 자원 활용이 용이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 자체 전문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하고 협력과 연계에 유리
- 관련 법규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1 참조
-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2 참조
- 다.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운영 계획: 붙임3 참조
- 마. 향후 추진일정
 -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및 접수: 2022. 4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2022. 5월
 - 선정결과 공고: 2022. 5월
 - 위탁계약 체결 등: 2022. 5. ~6월

불임 1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불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문화·보건분과 자문결과 【푸드마켓 운영 방안】

검토기준	검토의견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의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 운영이 용역, 대행 등의 다른 수행방식 보다는 적절 민간재원 조달, 전문 인력활용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위탁시에 정기적 점검 · 관리가 있으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 가능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및 중단성이 낮아 안전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후원과 적극적인 공모 등을 통해 자원 활용이 용이 하여 경제 효율성이 높음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기부물품 조달이 용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전문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하고 협력과 연계에 유리 업무연속성 보장된다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은 현장의 변화와 주민 수요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영하고 그에 따른 성과측정도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규에 의한 지도 · 감독을 받고 있어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위탁운영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면 투명성이 보장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시장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에 용이

불임 3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운영 계획

두류푸드마켓 위탁기간이 2022. 6. 30.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우리 지역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푸드마켓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법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합리적 선정 기준과 객관적인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

III 위탁현황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現 위탁현황	
			위탁기간	법인명
두류푸드마켓	두류공원로50길 23 (두류동)	242.63㎡ (지상1층)	2017.7.20.~ 2022.6.30.	상록수재단

※ 수탁자와 계약해지 협의에 따른 위탁만료일 변경(당초 '22.7.19→변경' '22.6.30.)

인력현황

계(명)	전담인력	사회복무요원	보조인력	비고
5	1	1	3 (희망플러스 일자리 1 노인일자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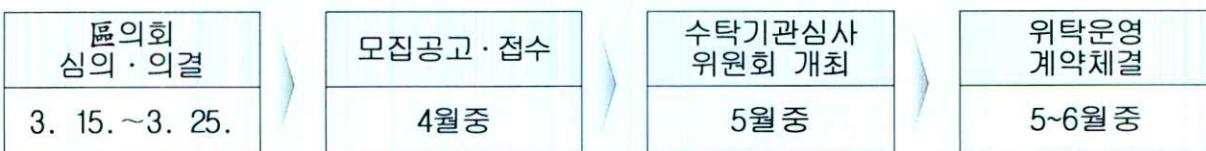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푸드마켓 사 업	기부물품 확보	지속적 기부를 위한 후원처 발굴
	기부물품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 월1회 생필품 지원(1년 단위)
	기부물품 관리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입력, 관리, 홍보

IV 추진 계획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2. 7. 1. ~ 2027. 6. 30. (5년)
- 대상기관: 두류푸드마켓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
- 추진절차



위탁업무

- 푸드마켓 시설 관리
- 푸드마켓 사업 수행
 - 기부식품 등의 모집 · 관리 및 제공
 -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후원처(기부자) 발굴
- 기부식품 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 사업
- 그 밖에 달서구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등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 사업이나 주요 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지부, 지사, 지회, 분소 등 포함)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 푸드마켓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부담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이 있는 법인

〈 신청제외 대상 〉

-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법인 이사장 포함)
- ▶ 사회복지사업관련 부실운영 또는 비리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법인
- ▶ 법인 및 산하시설이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법인
- ▶ 법인의 주사무소(지부, 지사, 지회, 분소 등 포함)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위반사실 발견(확인)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선정

□ 위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위탁운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 보조금 지원 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함

V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사전 동의

- 기 간: 2022. 3. 15.~3. 25.(제286회 임시회)
 - 민간위탁 동의안 區의회 제출: 3. 3.(목) 限
- 내 용: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 동의
 - 위탁사무명, 추진단계, 사무의 내용, 시설개요, 위탁기간, 수탁자선정방식,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포함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실시 >

-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 기 간: 2022. 2. 22.(화)~2. 28.(월)
- ▶ 방 법: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문화·보건 분과위원 서면검토
- ▶ 검토결과: 【붙임 1】

□ 공고 및 접수

- 모집공고: 2022. 3. 28. ~ 4. 11.(15일간)
- 접수기간: 2022. 4. 12. ~ 4. 18.(7일간)
- 접수장소: 행복나눔과 희망이음팀
- 접수방법: 방문제출(공휴일 제외, 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 공고문(안): 【붙임 2】
- 재공고 및 접수: 2022. 4. 19. ~ 4. 25.(7일간)
 - 모집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만 신청했을 경우 재공고
 -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했을 경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신청서식: 달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서식사용 【붙임 4】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 명 칭: 두류푸드마켓 수탁기관심사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승낙서 징구)
 - 공무원 2명
 - 구의원 1명(구의회 추천 의뢰)
 - 분야별 전문가 6명(교수 3, 민간전문가 3)
-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심사계획: 별도계획 수립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개최

- 시 기: 2022.5월중
- 심사내용(안):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 심사방법: 선정심사 배점표에 의함
 - 사전검토: 서류 검토(심의자료 사전 배부)
 - 집합심사: 신청법인 심사당일 제안 설명(PPT) 및 적정여부 심의
- 심사기준
 -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각 위원별 채점표에 항목별 점수 부여
 -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에서 절상)가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으로 선정(단,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 순으로 결정
 - 선정된 법인에 대해 결격사유 발견 시 차점자를 위탁법인으로 선정
 - 신청접수 결과 단독 신청일 경우 유효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 수탁 기관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라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법인으로 선정
- 심사결과 발표: 선정 수탁법인 개별통지 및 區 홈페이지 공고

□ 위탁운영 계약체결

- 일 시: 2022. 5.~6월
- 내 용: 위탁기간, 위탁사무, 수탁자 준수사항, 계약위반시 책임 등
- 법인은 선정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수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 위탁운영 계약 체결: 별도계획 수립

□ 인계인수서 작성

- 신규 위탁법인 선정 시 별도계획 수립

VI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3. 3.(목)限
- 모집공고 및 접수: 2022. 3. 28.~4. 18.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2. 5월
- 계약체결: 2022. 5.~6월